철원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6호

2026년도 제1회 철원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6년도 제1회 철원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수정사항 : 지적직 시험과목 수정

- (당초) 물리, 지적측량 → (변경) 수학, 지적측량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계급	연번	직렬	직류	선발인원	시험과목(제1·2차 병합시험)
총계				26명	
9급	1	사회복지	사회복지	7명	(2과목)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2	농업	일반농업	5명	(2과목) 생물, 식용작물
	3	녹지	산림자원	3명	(2과목) 생물, 임업경영
	4	환경	일반환경	3명	(2과목) 환경공학개론, 화학
	5	시설	건축	3명	(2과목) 물리, 건축계획
	6	시설	지적	1명	**(2과목) 수학, 지적측량**
	7	시설	토목	4명	(2과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258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 등) 심사

❍ **필기시험**: 1·2차 시험 병합실시

106.13.**.30 / 20260918101317065 / 김*현 / 자치행정과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결정)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시험시험 40문), 4지 택 1형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예정

❍ **면접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평정표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상','중, 하'평정 후, **아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합격자 유효기간**: 1년

❍ **임용유예**: 적용되지 않음

※ 임용유예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에 의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임용후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3 문제출제

❍ 철원군 자체출제: 문제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106.13.**.30 / 20260918101317314 / 김*현 / 자치행정과 /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1.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06.13.**.30 / 20260918101317517 / 김*현 / 자치행정과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106.13.**.30 / 20260918101317666 / 김*현 / 자치행정과 /

나. 거주지 제한 : 아래 ①번과 ②번의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연번	직렬	직류	거주요건
1	사회복지	사회복지	① **해당연도 1.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② **해당연도 1.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2	농업	일반농업	
3	녹지	산림자원	
4	환경	일반환경	
5	시설	건축	
6	시설	지적	
7	시설	토목	

※ 지원자가 없을 시 거주요건을 변경하여 재공고 할수 있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합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연령 : 9급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

라. 성별: 제한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

연번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1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 3급 이상	
2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3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4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

106.13.**.30 / 20260918101317834 / 김*현 / 자치행정과 /

연번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5	시설	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6	시설	지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7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자격증 검토사항】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으로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106.13.**.30 / 20260918101317889 / 김*현 / 자치행정과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예정)일	합격자 발표
2026.10. 26.(월) ~ 2026. 10. 30.(금)	필기시험	2026.11.13.(금)	2026.11.21.(토)	2026.11.23.(월)
	면 접	2026.11.23.(월)	2026.11.26.(목)	2026.12.07.(월)

※ 상기 일정은 시험실시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기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후 인적성 검사 실시

6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1) 교 부 처 : 철원군 홈페이지(www.cwg.go.kr)에 철원소식-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2)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

3) 접 수 처 : 철원군 자치행정과(본청 2층)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 접수시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를 구입 후 동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 10. 30.(금) 소인분에 한해서 접수합니다. ※ 수입증지: 5,000원**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33-450-5232)**

나. 제출서류

1)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2)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4) 응시원서(접수장소 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받아 사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자는 철원군 수입증지(5,000원권) 구입 후 원서 제출(구입처 : 군청 1층 민원허가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06.13.**.30 / 20260918101318111 / 김*현 / 자치행정과 /

5) 이력서 1부.

6) 자기소개서 1부.

7)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원본지참**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사본(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9)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기능사 자격증 응시자는 필수)**

▸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연구)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해당 응시자가 관련분야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정확한 관련분야 근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고 발급기관의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날인 포함)하여야 합니다.

※ 주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기간 인정

▸ 제출서류

-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첨부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 기관(사업체)에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금액증명원: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경력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2) 기타 어학성적, 상장, 자격 등 자료(해당자만 제출)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06.13.**.30 / 20260918101318247 / 김*현 / 자치행정과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106.13.**.30 / 20260918101318385 / 김*현 / 자치행정과 /

라. 위의 '나' 항과 '다' 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 시 가산점란 미표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중 하나]**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하였다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거주지·가점·학력·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106.13.**.30 / 20260918101318449 / 김*현 / 자치행정과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격증·면허증 등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타기관으로 전출을 제한합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내용 허위기재,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철원군청 홈페이지/소식알림/시험채용정보에 공고하며, **시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033-450-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6.13.**.30 / 20260918101318513 / 김*현 / 자치행정과 /